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1. 주요 내용

1) 수요자에 대한 저압의 인입관 공사, 단순연결공사 등의 짧은 구간 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안 제21조)

- ① 도로와 평행한 배관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분기되는 저압의 인입관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의 배관길이가 짧은 구간에 대하여도 상주 시공감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공급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 ② 호칭지름이 50mm가 초과되는 저압의 공급관 공사 중 10m 미만인 공급관 공사에 대하여는 상주시공감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③ 가스사용자에게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시공감리의 용어 정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① 상주시공감리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전체 공정에 대하여 확인·감리를 실시하고 일반시공감리는 가스공급시설의 일부공정에 대하여만 확인·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주'란 용어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태로 감리를 행하는 것처럼 시공업자 및 가스사용자 등이 오해를 하고 있어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② 시공감리의 용어를 현행 제도의 운영에 맞게 감리대상 배관 중 지정된 공정의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가스공급시설 중 일부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부공정시공감리'

로 명확히 구분함

- ③ 시공감리의 용어 및 감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공업자 및 가스사용자 등의 민원질의 및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가스차단장치의 중복 설치 면제(안 별표 6 제7호다목, 제8호가목 및 별표 7 제3호의2)

- ① 가스공급시설의 배관과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실 및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인근에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② 가스공급시설의 배관 분기점,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및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지상에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차단장치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 ③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차단장치로 가스공급

시설의 배관, 지하 정압기실 및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지상차단장치를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지상차단장치의 유지·관리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사용자의 토지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 설치 허용 [안 별표 6 제8호가목(13)]

- ①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차 등의 통행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함
- ② 공급관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토지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③ 화재·폭발 등의 위급상황 발생시 가스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12조(공사계획승인신청 등) ① <u>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u>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2조(공사계획승인신청 등) ① <u>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u> ----- ----- ----- ----- ----- <u>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u> -- ----- -----	○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포함시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p>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p> <p>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p> <p>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p> <p>1. ~ 3. (생략)</p> <p>4. 별표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u>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u></p>	<p>-----</p> <p>-----</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p> <p>① -----</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초과인 저압의 공급관 중 10미터 미만인 공급관, 호칭지름</u></p>	<p></p> <p></p> <p></p> <p>○ 시공자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지연 교부로 가스공급의 지연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불편 해소</p> <p></p> <p></p> <p></p> <p>○ 수요자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단 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불편 완화</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p>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p> <p>5. (생략)</p> <p>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u></p> <p>2. <u>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 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u></p> <p>3. <u>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u></p> <p>4.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u></p> <p>5.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u></p> <p>제22조(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 등)</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p>	<p>----- -----]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u></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u></p> <p>가. <u>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u></p> <p>나. <u>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u></p> <p>다.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u></p> <p>라.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 (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u></p> <p>제22조(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수요자 현행 법령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를 분리</p> <p>○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 변경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공자 및 수요자의 불편 해소</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p>성검사기관은 <u>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23조(시공감리 완성검사등의 기준 등)</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u>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상주시공감리와 다음 각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p> <p>1. ~ 5.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u>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u>상주시공감리대상</u> 가·나. (생략)</p> <p>2. <u>일반시공감리대상</u> 가·나. (생략)</p> <p>제25조 (정기검사) ①·② (생략)</p>	<p>----- <u>제21조제2항제1호의 설치공사 또는 동항 제2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제21조제2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u></p> <p>제23조(시공감리 완성검사등의 기준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산업자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실시하는 일부 공정 시 공 감 리</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u>전공정시공감리</u> - - - 일부 공 정 시 공 감 리-----.</p> <p>1. <u>전공정시공감리대상</u> 가·나. (현행과 같음)</p> <p>2. <u>일부공정시공감리대상</u> 가·나. (현행과 같음)</p> <p>제25조 (정기검사) ①·② (현행과</p>	<p>○ 변경 완성검사시 완성검사필증의 뒷면기재로 검사행정의 간소화도모</p> <p>○ 상주시공감리는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전체 공정에 대해서 확인·감리를 실시하고, 일반시공감리는 가스공급시설의 일부공정에 대해서만 확인·감리를 실시하므로 현행 제도의 운영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상주란 용어로 인한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 해소</p> <p>○ 제3항의 개정사유와 동일</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p>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u>매 1년</u>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신설></p>	<p>같음</p> <p>③----- ----- <u>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은 10년)</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1. <u>제23조제3항, 제25조제7항, 별표 6 제8호가목(4)(다) 및 별표 7 제1호사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u></p> <p>2. <u>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u></p> <p>3. <u>별표 1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u></p> <p><u>제2조(적용례)①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u></p> <p><u>②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u></p>	<p>○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검사주기 완화</p> <p>※ 액법과 동일하게 적용(2006. 5. 3일 개정 반영됨)</p>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 제1항· 제62조의2제1항관련) 1·2. (생략) 3. 사업소외의 배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분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라목(1) 및 동목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5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 제1항· 제62조의2제1항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분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로서 당해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p>	<p>○ 사업소의 범위를 제조소와 공급소로 명확히 하고 항목정비 및 문구정리 ○ 변경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3 공사계획 신고대상과 동일하게 문구정리</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u>분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u></p> <p>(2) <u>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u></p> <p>4.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p> <p>가. 설치공사</p> <p>나. 위치변경공사</p> <p>【별표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 제2항·제62조의2제2항관련)</p> <p>1·2. (생략)</p> <p>3. 사업소외의 배관</p> <p>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1) 호칭지름이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p> <p>(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p> <p>나.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p>	<p>증설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가) <u>분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u></p> <p>(나) <u>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u></p> <p>나.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p> <p>(1) <u>설치공사</u></p> <p>(2) <u>위치변경공사</u></p> <p><삭제></p> <p>【별표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 제2항·제62조의2제2항관련)</p> <p>1·2. (현행과 같음)</p> <p>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p> <p>가. 배관</p> <p>(1)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가) 호칭지름이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p> <p>(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p>	<p>○ 제3호나목으로 이기함</p> <p>○ 별표2 개정사유와 동일</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u>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1) 호칭지름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 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p> <p>(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p> <p>4. 정압기지(정압기)</p> <p>가.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p> <p>나. 가열설비 및 방산탑(베트스택)의 설치 또는 위치변경공사</p> <p>다. 안전밸브의 종류변경공사</p> <p>라.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p>	<p>(2) <u>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 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u>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p>(가) 호칭지름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 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p> <p>(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p> <p>나. 정압기지(정압기)</p> <p>(1)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p> <p>(2) 가열설비 및 방산탑(베트스택)의 설치 또는 위치변경공사</p> <p>(3) 안전밸브의 종류변경공사</p> <p>(4)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p> <p>〈삭제〉</p>	<p>○ 제3호나목으로 이기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 관련)</p> <p>7. 정압기</p> <p>가·나. (생략)</p> <p>다. 가스차단장치</p> <p>(1) (생략)</p> <p>(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단서 신설></p> <p>라. 감시장치등</p> <p>(1)·(2) (생략)</p> <p>(3) <u>출입문 개폐통보장치등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여부</u>(기존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마. ~카. (생략)</p> <p>타. 분해점검</p> <p>정압기는 2년에 1회이상 분해점</p>	<p>【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 관련)</p> <p>7. 정압기</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가스차단장치</p> <p>(1) (현행과 같음)</p> <p>(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u>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라.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출입문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통보장치</u></p> <p><u>정압기실에는 출입문 및 정압기 출구의 압력이 이상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그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여부</u></p> <p>-----</p> <p>-----</p> <p>-----</p> <p>마. ~카. (현행과 같음)</p> <p>타. 분해점검</p> <p>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p>	<p>○ 지하 정압기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 외부 지상에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로 가스차단장치 설치를 제외토록 하여 공급자 및 사용자의 부담 완화</p> <p>○ 정압기에 설치하고 있는 긴급차단밸브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문구정리</p> <p>○ 정압기의 분해점검 기준날짜와 작</p>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공급 개시후 1월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3년에 1회)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할 것</p> <p>8. 배관 가. 배관 (1) 배관의 재료등 (가) (생 략) (나) 지하매설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 표시 허가제품 또는 <u>이와 동등이상의 성능</u>을 가진 것으로 하고, 이음부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4MPa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u>이와 동등이상의 성능</u>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생 략) (4) 지하매설배관의 설치 (가)·(나) (생 략) (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p>	<p><u>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u></p> <p>8. ---- 가.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u>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u> ----- ----- ----- ----- <u>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u> ----- ----- ----- ----- ----- (2)·(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p>	<p>동상황 주기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 정리</p> <p>○ KS배관 이외의 배관의 성능규정을 명확히 함 ※ 액법 고시 및 일본의 가스공작물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도관·하수관거 통신케이블 등 타시설물과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u>보호관 또는 보호관</u>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라) (생략)</p> <p>(5) ~ (12) (생략)</p> <p>(13) 가스차단장치</p> <p>(가) 고압 또는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단서 신설 ></p> <p>(나)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u>다만, 가스차단 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u></p> <p>(다) 지하실·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가스가 채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p>	<p>----- ----- -----, <u>산업자</u> <u>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u> <u>보호관 또는 보호</u> <u>관</u>-----.</p> <p>(라) (현행과 같음)</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p> <p>(가) ----- ----- ----- -----, <u>다만, 분기하</u> <u>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u> <u>50m 이하인 것으로서 (나)</u> <u>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u> <u>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나) ----- ----- ----- ----- ----- ----- ----- <u>도로 또는</u> <u>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u> <u>그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u> <u>곳에 설치할 것</u></p> <p>(다) ----- ----- ----- -----</p>	<p>○ (나)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호관 및 보호관의 재질·설비방법 등을 규정한 현행 고시(통합고시 제2-18-9조)에 따르도록 관련근거를 명확히 함</p> <p>○ 가스차단장치의 중복 설치 방지로 공급자의 불편 해소</p> <p>○ 가스차단장치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별표9에서 규정</p>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의 부근에 위급한 때에 그 지하실등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u>설치하고</u>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p>	<p>----- ----- ----- - <u>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u> ----- -----</p>	<p>○ 지하실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부 지상에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로 가스차단장치 설치를 제외토록 함</p>
<p>9·10. (생략)</p>	<p>9·10. (현행과 같음)</p>	
<p>11. 구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긴급차단장치등</p>	<p>11.----- <u>가. 공 급 권 역 에</u> ----- ----- ----- ----- ----- ----- ----- -----</p>	<p>○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지역을 허가 지역의 공급권역으로 명확히 하고자 문구정리</p>
<p>가. <u>사업장에</u> 설치하는 배관은 지진 또는 대형가스누출에 의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p>	<p>----- ----- ----- ----- ----- ----- ----- ----- -----</p>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관련)</p>	<p>【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관련)</p>	
<p>1. 배관</p>	<p>1. -----</p>	
<p>가. (본문 생략)</p>	<p>가.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지하매설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허가 제품 또는 <u>이와 동등이상의</u></p>	<p>(2) ----- ----- ----- ----- ----- <u>이와 동등</u></p>	<p>○ KS배관 이외의 배관의 성능규정을 명확히 함 ※ 액법 고시 및 일본의 가스공작물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이 음부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4MPa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u>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u>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p> <p>(3)·(4) (생략) 나. ~ 다. (생략) 라. 실내배관의 설치</p> <p>(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u>스테인레스강관</u>,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p> <p>(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u>스테인레스강관</u>,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뭇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p>	<p><u>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u>----- ----- ----- <u>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u> ----- ----- -----.</p> <p>(3)·(4)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p> <p>(1) ----- -----, <u>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u>, ----- -----.</p> <p>(2) ----- ----- -----, <u>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u>, ----- ----- ----- ----- -----</p>	<p>○ 건축물내 매설배관의 재료에 대한 현행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p> <p>마·바. (생략)</p> <p>사. 배관의 고정등</p> <p>(1)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mm이상 33mm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mm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단서 신설></p> <p>3의2. 지상차단장치</p> <p>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단서 신설></p> <p>7. 연소기의 설치방법</p> <p>가. ~ 바 (생략)</p> <p>사.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군·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p> <p>【별표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관련)</p>	<p>----- -----.</p> <p>마·바. (현행과 같음)</p> <p>사. -----</p> <p>(1)-----</p> <p>----- ----- ----- ----- -----</p> <p>-----, <u>다만,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것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u></p> <p>3의2. -----</p> <p>----- ----- -----</p> <p>-----, <u>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7.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 <u>급기통</u></p> <p>----- -----</p> <p>-----</p> <p>【별표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관련)</p>	<p>○ 호칭지름 100mm이상인 배관의 고정간격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 해소</p> <p>○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지상 50m 이내에 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를 지상차단장치로 같음하여 사용자의 부담 해소</p> <p>○ 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2. (생략)</p> <p>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별표14】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 제1항관련)</p> <p>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나. (생략)</p> <p>3. (생략)</p> <p>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u>부담으로 하며, 별표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u></p> <p>【별표14】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 제1항관련)</p> <p>1. ----- ----- <u>11월 말 까지</u> ----- ----- -----.</p> <p>2. ----- 가. <u>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p>	<p>○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하는 경우 그 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p> <p>○ 사업자의 차기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이 12월에 수립되므로 공사의 안전교육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도록 하기 위함 ※ 산자부 법령 정비사항</p> <p>○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 안전교육을 수강하므로 교육대상인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도록 함 - 고법 시행규칙과 문구 통일함</p>